[별표 1-2] 관리운영기간 중 개량 또는 증설 추진 절차(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신설 2024.10.14., 개정 2025.7.28.>

<추진 절차>	<수행 주체>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이 개량 또는 증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기존 사업시행자가 개량 또는 증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가능
적격성 재조사	・KDI 등에 의뢰하여 시행
기본설계 등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기본계획 및 적격성 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수행
공개경쟁 절차 (건설, 재원조달 등)	・사업시행자는 공개경쟁절차계획 수립, 제안(입찰)공고문 작성 후 승인 요청 → 주무관청 검토 → (요건 해당 시) 민투심 심의 → 검토 결과 반영 후 사업시행자는 공개경쟁절차 수행(주무관청 감독) ・공개경쟁 절차 및 조건의 공정성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최종 공개경쟁 조건 확정 시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개경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관련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음.
총사업비 확정	・사업시행자는 공개경쟁 절차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변경으로 반영
금융 조건 확정	・공개경쟁 절차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의 금융 조건을 확정함.
실시협약 변경	・주무관청, 사업시행자는 상기 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함.

※ 개량 또는 증설 시 준수 및 고려 사항

・ 공개 경쟁 절차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다른 입찰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공개경쟁절차를 위한 제안(입찰) 공고문은 민투기본계획상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전문기관이 작성한 경우 검토를 받은 것으로 갈음함

・ 공개 경쟁 절차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는 민투기본계획상 전문기관 이외 조달청, 금융자문사, 주무관청이 승인한 입찰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포함함